용인르네상스	법률동향	2026. 8. 31.(월) 법 무 과 장 이명희(☎32030) 법무행정팀장 최윤미(☎33724) 주 무 관 김덕영(☎33235)

9월 주요 시행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시행 2026. 9. 1.] [대통령령 제36559호, 2026. 8. 4.,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어기본법 –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43호, 2026. 6. 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문서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누리집의 게시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소방기본법 –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31호, 2026. 6. 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인구전략기본법 –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전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며,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인구정책 관련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의 목적을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1조).

다. 인구 관련 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는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4조).

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함(제36조).

마. 시·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시·도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38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제39조).

사.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 인구정책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제41조).

– 농어촌정비법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33호, 2026. 3. 10.,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되,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지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강화(제30조의3 신설 및 제31조)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확보 등 그 역할을 강화함.

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제3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매출액,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함.

다.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통지 범위 확대 등(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종전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위조·변조·훼손된 경우에도 통지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의무를 부여함.

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강화(제64조의2제2항 및 제6항 신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함.

– 형법 –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 건축사법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며, 공공발주사업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설계·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고용보험법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4호, 2026. 3. 17., 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를 상시적·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일반 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수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직근로자등“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정의함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등의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다. 공무직위원회의 운영원칙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 등을 명시함

라. 공무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마.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에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공무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5호, 2026. 3. 17.,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억제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사업의 중지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제재처분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6호, 2026. 3. 17.,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나무·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하천법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1호, 2026. 3. 17.,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지정·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며,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먼저 한 후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며, 하천구역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7호, 2026. 3. 17.,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연령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변경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신설하며,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73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방법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새로 도입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 및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관련 변경 사항을 육아휴직의 신청, 신청 철회 및 종료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 8. 1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변경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며,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또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변경 사항과 새로 도입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단기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8호, 2026. 8. 1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73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공포, 8. 20. 및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돌봄 대상이 되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를 임신·출산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호, 2026. 7. 15.,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황에 대한 기록·보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자동전송으로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오존 주의보의 발령과 해제의 기준값이 동일하여 발령과 해제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존 주의보의 해제기준을 오존 농도 0.12ppm 미만에서 0.10ppm 미만으로 낮추는 한편,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의 기준과 해당 기준 미준수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시행 2026. 9. 24.] [대통령령 제35770호, 2025. 9. 23.,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대상기관에 동장을 추가하고,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 중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4킬로미터 미만의 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9. 26.] [법률 제20857호, 2025. 3. 25., 일괄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적 현지성이 강한 사무와 관련된 국가 권한을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함.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 9. 26.] [대통령령 제36520호, 2026. 7. 2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사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교육사의 등급을 3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고,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운영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하는 한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도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계획의 수립 절차·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그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9. 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호, 2026. 3. 1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되는 제품의 환경표지 등에 관한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보하고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822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절차, 위반내용 등 공개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공공환경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등을 추가하고,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기업 지정기준 중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대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 접수 의안 확인(국회)
http://likms.assembly.go.kr/bill
○ 중앙부처 입법예고 내용 확인(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